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1나6709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2. 11. 2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가소11526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3,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24.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6. 3. 31. 서울 관악구 C 소재 버스정류장 부근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을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송달하였고 피고가 2020. 4. 7.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2020. 3. 30.자) 역시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가 2020. 4. 28.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20. 5.경 이 사건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0. 6. 10. 14:10으로 지정된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에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즉시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20. 7. 8.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0. 7. 23.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21. 10. 6.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과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이 사건 소송절차가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는 달리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법원에 문의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¹⁾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20. 7. 23.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21. 10. 6.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아, 판사 조성필, 판사 이관형

1)민사소송법 제185조 제항에 의하면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